

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약	소 관 부 서	소관 위원회
1	성남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☐ 주요골자 ·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(안 제6조~9조) -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→ 신청 및 접수 → 심의 → 결과통보 ·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10조) - 구성 : 시의원, 관계전문가, 공무원등 15인이내 - 기능 :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사항 심의	기획예산과	자치행정
2	성남시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중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성남시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비료관리법 개정 에 따라 시장권한사항중 일부를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개정(위임사무 폐지)하는 등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(안 제2조)	자치행정과	자치행정
3	성남시고문공인 노무사운영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전문가의 관계법령 해석 및 자문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· 노무관리, 노사분규등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기 위함	지역경제과	경제환경

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관 위원회
4	성남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주요골자 · 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함(안 제2조) -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사항 -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사항 -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사항 · 위·해촉에 관한사항을 정함(안 제3조) - 위촉인원 :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2인 - 임 기 : 2년으로 하되, 재위촉 가능 · 자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하고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때에는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할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 □ 제안이유 · 현행 시세감면조례가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·조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·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용어의정비 보완 및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을 현행 전액감면에서 → 50%감면으로 조정(안 제4조) ·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범위를 확대(안 제8조제1항) ·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미분양에서 → 3년간 미분양으로 단축함(안 제11조) · 주민공동체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(안 제13조) · 도시형공장으로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/100으로 5년간 경감토록 신설함(안 제22조의2) ·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→ 50%경감으로 조정함(안 제24조)	세 정 과	경제환경

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5	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- 정기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원금을 추가 조성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- 성남시체육진흥기금을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토록 한 조항의 조성기간과 금액을 삭제(안 제2조) - 필요시 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	체육청소년과	사회복지
6	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	☐ 제안이유 -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무질서한 사업추진의 사전 예방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- 자문위원회는 시의원, 관계전문가, 공무원 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3조) - 자문위원회의 기능(안 제4조) - 시장이 입안한 도시정비사업안에 대한 자문 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- 기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한 자문	도시개발과	도시건설
7	성남시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	☐ 제안이유 현 모란시장이 위치한 대원천 북개지역의 도로 기능을 회복시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민속5일장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장이전 부지를 매입하고	회 계 과	경제환경

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
		· 단남시영아파트를 입주민들에게 분양 전환하며 · 중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경찰서에 매각하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공용 부지를 매입하므로써 효율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조성 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취득(토지) : 19필지 17,998㎡(5,444평) 4,451,257천원 - 모란시장 이전부지 19필지 17,998㎡(5,444평) 4,451,257천원 · 처분(토지) : 2필지 12,947㎡(3,916평) 17,595,454천원 - 성남중부경찰서부지 1필지 6,432.9㎡(1,946평) 12,944,458천원 - 단남시영임대아파트부지 1필지 6,514.1㎡(1,970평) 4,650,996천원 · 처분(건물) : 3동 19,260.51㎡(5,826평) 2,458,240천원 - 성남중부경찰서건물 1동 1,613.06㎡(488평) 216,000천원 - 단남시영임대아파트 2동 17,647.45㎡(5,338평) 2,242,240천원		
8	성남시도시·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건	□ 제안이유 · 고도제한의 완화 및 성남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에 따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게 사업성 및 사업방식을 재검토하여 성남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기준 및 목표연도 변경 - 기준년도 : 2000년에서 → 2002년으로 - 목표연도 : 2016년에서 → 2010년으로 · 사업방식의 변경 - 수복재개발사업 14개구역을 →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구역과 철거재개발사업 3개구역으로 변경	도시개발과	도시건설

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9	태평2구역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및정비구역지 정에관한의견제시 의견	• 인구계획 - 인구수 : 175,580인에서 → 151,000인으로 - 세대수 : 58,530세대에서 → 58,000세대로 • 획지규모계획 - 대지분할기준 : 132㎡이상에서 → 90㎡이상으로 • 단계별계획(목표년도) - 1단계 : 2002~2006년에서 → 2002~2009년으로 - 2단계 : 2007~2011년에서 → 2007~2010년으로 - 3단계 : 2012~2016년에서 → 2010년 이후로 • 단계별계획(구역별) - 1단계 : 변경사항 없음 - 2단계 : 태평·3수진, 산성·산흥, 은행, 금광, 상대2구역에서 → 태평3, 산성, 수진1, 은행1, 금광1·2구역으로 - 3단계 : 태평4, 산흥·2수진, 중원·2금광, 상대2구역에서 → 태평·4수진, 산흥·2·3, 중원·2, 상대·3구역으로 • 소요사업비 : 증 5,197억원 - 주거환경개선사업 : 감945억원(시 부담) - 철거재개발사업 : 증6,142억원(조합원 부담) □ 제안이유 •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과소필지가 밀집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바 •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• 사업의 개요 - 구역명칭 : 태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- 위 치 : 수정구 태평2동 1083일원 - 면 적 : 154,607㎡(46,769평) - 시행방법 : 공공부분-성남시, 민간부분-현지개발 - 사업시행자 : 성남시장	도시개발과	도시건설

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0	은행2구역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및정비구역지 정에관한의견제시 의견	• 토지이용계획 - 주거용지 : 106,353m²(68.8%) - 공 원 : 48,254m²(31.2%) - 어린이놀이터 : 4,023m²(2.6%) - 광 장 : 787m²(0.5%) - 주차장 : 7,871m²(5.1%) - 공공용지 : 924m²(0.6%) - 도 로 : 30,486m²(19.7%) • 용도지역·구역에 관한 계획 - 용도지역 : 제2종 일반주거지역 - 용도구역 : 태평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□ 제안이유 •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과소필지가 밀집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바 •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• 사업의 개요 - 구역명칭 :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- 위 치 : 중원구 은행2동 1342일원 - 면 적 : 169,966m²(51,418평) - 시행방법 : 공공부분-성남시, 민간부분-현지개발 - 사업시행자 : 성남시장 • 토지이용계획 - 주거용지 : 116,506m²(68.5%) - 공 원 : 53,460m²(31.5%) - 어린이놀이터 : 2,415m²(1.4%) - 주 차 장 : 9,295m²(5.5%) - 도 로 : 33,892m²(20.0%) • 용도지역·구역에관한계획 - 용도지역 : 제2종 일반주거지역 - 용도구역 : 은행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도시개발과	도시건설

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관 위원회
11	단대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지정에 관한의견제시의건	□ 제안이유 ·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과소필지가 밀집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바 ·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사업의 개요 - 구역명칭 :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 - 위 치 : 수정구 단대동 89-1일원 - 면 적 : 58,195.1㎡(17,604평) - 시행방법 : 철거재개발 방식(공동주택건립) - 사업시행자 : 대한주택공사(예정) · 토지이용계획 - 공동주택용지 : 41,841㎡(71.9%) - 공동주택용지(임대주택) : 4,293.5㎡(7.4%) - 공 원 : 3,538.9㎡(6.1%) - 도 로 : 8,191.7㎡(14.1%) - 공공용지 : 330㎡(0.5%) ·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, 층고에 관한 계획 - 건폐율 : 50% 이하 - 용적률 : 250% 이하 - 층 고 : 24층 이하	도시개발과	도시건설

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관 위원회
12	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지정에 관한의견제시의건	☐ 제안이유 ·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과소필지가 밀집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바 ·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사업의 개요 - 구역명칭 :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 - 위 치 : 중원구 중동 1500일원 - 면 적 : 40,782.4㎡(12,337평) - 시행방법 : 철거재개발 방식(공동주택건립) - 사업시행자 : 대한주택공사(예정) · 토지이용계획 - 공동주택용지 : 25,105.1㎡(61.6%) - 공동주택용지(임대주택) : 4,112㎡(10.1%) - 공 원 : 2,067.1㎡(5.1%) - 도 로 : 6,462.1㎡(15.8%) - 주 차 장 : 598.5㎡(1.5%) - 공공용지 : 1,000㎡(2.4%) - 종교용지 : 1,437.6㎡(3.5%) ·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, 층고에 관한 계획 - 건폐율 : 50% 이하 - 용적률 : 250% 이하 - 층 고 : 24층 이하(종교시설용지는 4층이하)	도시개발과	도시건설